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제1조...급여계약. 목적

제2조...계약기간

제3조...계약해지

제4조...신원인수인의 권리

제5조...신원인수인의 의무

제6조...이용료

제7조...이용료변경 및 절차

제8조...이용료 납부

제9조...급여제공

제10조...서비스내용

제11조...급여이용

제12조...특별보호



대구제일주간보호센터

DAEGU JEIL SILVER CARE CENTER

제1조 (급여계약. 목적 등)

-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의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-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-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.
 - 1. 계약 당사자
 - 2. 계약기간
 - 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 - 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-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< 신설 2019.6.12. >
- 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.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
- ②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
-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
-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, 센터는 해당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.
 -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-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- ⑤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 (계약해지)

-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.
-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
 - 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 - 3.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 - 4. 이용자가 고의로 센터 시설물을 파괴, 훼손하였을 경우
 - 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지정을 인정받지 못한 때

6. 기타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매우 인정될 경우

제4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)

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.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
3. 이용자의 면회, 외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4.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.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6. 이용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.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8.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
제5조 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)

1.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알림 또는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.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4.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알림의 의무
5.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오손, 파손된 시설 설비, 비품 및 집기의 원상회복 의무

제6조 (이용료)

-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,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.
-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부담 한다.
- ③ 이용료는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산정한다.
- ④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하여 상시 열람가능하도록 한다.

제7조 (이용료 변경 및 절차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1.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
2.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
3. 이용자의 건강상태,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,
4. [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]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
5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

② 급여비용의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.

1.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즉시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.
2.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.
3. 제공시간 및 횟수는 수급자(보호자)와 협의하여 적용한다.

- 4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.
- 5.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,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이용료 납부)

-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매달 12일까지 고지하여야 한다.
-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,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.
-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
주.야간보호 급여비용 (2026년)							
-----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등급	추가산정
월 한도액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	주·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이상 이용시 20% 추가 산정
20%추가	3,015,480	2,797,440	1,833,840	1,691,640	1,450,680	-	

*2026년 월 이용료 한도액 - 한도액 초과시 본인부담금이 100% 추가됩니다.	
*공휴일,일요일(30%)은 평일기준수가의 가산적용 됩니다.	

등급	1일당						8시간* 1일 이용기준			이용가능 일수 평일+휴일
	시간	3시간이상	6시간이상	8시간이상	10시간이상	13시간초과	본인부담금	식대	합계	
1	1일 이용료	41,820	56,060	69,730	76,820	82,370	—	—	—	26+4
	본부금 (15%)	6,270	8,400	10,450	11,520	12,350	10,450	6,000	16,450	
	본부금 (9%)	3,760	5,040	6,270	6,910	7,410	6,270	6,000	12,270	
	본부금 (6%)	2,500	3,360	4,180	4,600	4,940	4,180	6,000	10,180	
2	1일 이용료	38,720	51,930	64,590	71,160	76,310	—	—	—	26+4
	본부금 (15%)	5,800	7,780	9,680	10,670	11,440	9,680	6,000	15,680	
	본부금 (9%)	3,480	4,670	5,810	6,400	6,860	5,810	6,000	11,810	
	본부금 (6%)	2,320	3,110	3,870	4,260	4,570	3,870	6,000	9,870	
3	1일 이용료	35,740	47,940	59,640	65,750	70,500	—	—	—	26+3
	본부금 (15%)	5,360	7,190	8,940	9,860	10,570	8,940	6,000	14,940	
	본부금 (9%)	3,210	4,310	5,360	5,910	6,340	5,360	6,000	11,360	
	본부금 (6%)	2,140	2,870	3,570	3,940	4,230	3,570	6,000	9,570	
4	1일 이용료	34,120	46,300	58,010	64,090	68,860	—	—	—	26+2
	본부금 (15%)	5,110	6,940	8,700	9,610	10,320	8,700	6,000	14,700	

	본부금 (9%)	3,070	4,160	5,220	5,760	6,190	5,220	6,000	11,220	
	본부금 (6%)	2,040	2,770	3,480	3,840	4,130	3,480	6,000	9,480	
5	1일 이용료	32,490	44,650	56,360	62,460	67,240		—	—	25+0
	본부금 (15%)	4,870	6,690	8,450	9,360	10,080	8,450	6,000	14,450	
	본부금 (9%)	2,920	4,010	5,070	5,620	6,050	5,070	6,000	11,070	
	본부금 (6%)	1,890	2,670	3,380	3,740	4,030	3,380	6,000	9,380	
인지 지원 등급	1일 이용료	32,490	44,650	56,360	56,360	56,360		—	—	12+0
	본부금 (15%)	4,870	6,690	8,450	8,450	8,450	8,450	6,000	14,450	
	본부금 (9%)	2,920	4,010	5,070	5,070	5,070	5,070	6,000	11,070	
	본부금 (6%)	1,940	2,670	3,380	3,380	3,380	3,380	6,000	9,380	

*비급여 항목 : 식대 (1식) ₩2,500 간식 (1일) ₩1,000

*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구청 사전 승인후 식대만 부담.

*기저귀 비용은 수급자 부담.

**등급의이용시 일일₩20,000(식대포함)부담

제9조 (급여제공)

-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0조 (서비스 내용)

- ① 장기요양급여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 1.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.
 2.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.
 3. 정기적으로 가족지지프로그램(매월 생신잔치,어버이날행사등)을 제공하여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.
- ③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 1. 신체활동지원
 2. 일상생활지원

3. 정서지원
4. 인지활동지원
5. 여가활동지원
6.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

④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·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1조 (급여이용)

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.

② 급여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.

요일	시간	비고
월~금	07:00 ~ 18:30	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07:30 ~ 18:00
토	07:30 ~ 18:00	

제12조 (특별보호)

①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
2.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,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

③ 전염병(A형간염, 결핵, C형간염, 음) 환자 발생 시 시설장은 즉시 관할 건보공단(장기요양운영센터)에 전염병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